

# **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(불법찬조금) 근절 대책**

**2023. 3.**

**만경여자중학교**

## **【 목 차 】**

I. 추진배경	1
II. 불법찬조금 개념 및 유형(예시)	1
III. 불법찬조금 관련 문제점 및 발생원인	2
1. 학교발전기금 모금·사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	2
2. 학교발전기금 모금·사용에 대한 제한 및 행정절차로 인해 음성적인 불법찬조금으로 변질	2
3. 학부모회 등의 금품 모금행위 등에 대한 관리·감독 소홀	2
4. 학교 운동부와 예체능 분야 촌지, 불법 찬조금 관행 잔존	2
IV.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	3
1. 「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요령」 표준(안) 개정·통보	3
2.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 강화	3
3. 시·도교육청 자체 불법찬조금 집중 점검 및 관리·감독 강화	3
V. 협조 요청 사항	4
【참고】 학교발전기금 조성·접수 시 제한(금지) 사항	5

#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(불법찬조금) 근절 대책

## I. 추진배경

-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조성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·운용하고 있음  
※ (근거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54조, 「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요령」(교육부 및 시·도교육청 지침)
- '20년 국정감사에서 학교발전기금의 관리·감독 문제 제기 및 '22년 현장 지도·점검 결과,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 찬조금 모금 관행 잔존  
※ 시·도교육청(초·중·고·특, 11,908교 점검) 대부분 특이사항 없음: 1개 고등학교 (운동부 운영비 및 지도자 인건비 부당 조성) 지도교사 경징계, 교장 경고
- 교육현장에서 발전기금 부당 조성·운영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 목적 달성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므로, 새학기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

## II. 불법찬조금 개념 및 유형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, 조성 절차·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

<불법찬조금 조성·사용(예시)>

조성주체	조성대상	집행내용
· 자생단체 (임원) · 학교장	· 학부모 · 일반인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교원복지비: 수고비, 회식비, 간식비 등</li><li>· 학교운영비: 행사지원, 비품구입, 기념품 등</li><li>· 운동부후원: 감독·코치인건비, 훈련비 등</li></ul>

## III. 불법찬조금 관련 문제점 및 발생원인

### ① 학교발전기금 모금·사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

- 찬조금을 부족한 학교예산을 보충하는 수단(교직원)으로 인식하거나, 교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(학부모)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잔존
- 불법찬조금이 소액이고, 집단적으로 모금·사용되는 점에서 교사 및 학부모가 부패행위라는 인식 결여  
※ 스승의 날 학부모회 임원들이 꽃바구니와 홍삼(즙) 상자를 교장실과 행정실에 놓고 감

### ② 학교발전기금 모금·사용에 대한 제한 및 행정절차로 인해 음성적인 불법찬조금으로 변질

-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·보완에 따라 모금·사용 제한 사항 세분화, 지침·규정 등 행정절차 강화로 학교발전기금 조성 기피 현상 초래  
※ 학부모회에서 총무가 학부모 임원들에게 학급별 금액을 할당·모금하여 별도 계좌 입금, 학교축제, 체험학습 등 학교 행사 시 집행

### ③ 학부모회 등의 금품 모금행위 등에 대한 관리·감독 소홀

- 학교장은 학부모회 등에 대한 감독을 통해 불법모금을 방지하여야 하나, 친목모임(자생단체)이라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  
※ 학부모회 조성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별도 계좌 관리 및 집행, 학교관리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해 접수·처리하지 않는 등 불법찬조금 모금 활동에 대한 관리 부적정

### ④ 학교 운동부와 예체능 분야 불법 찬조금 관행 잔존

- 불법 찬조금 유형은 대회 출전 지도자 사례비, 지도자 인건비·운영비, 교직원 선물비 등
- 학교운동부지도자(코치포함) 인건비(수당포함),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·집행
-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할 것을 강요하는 등 학교발전기금을 직·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  
※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, 주의 처분 및 금액 전액 '환수 조치'

## IV.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

### ① 「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요령」 표준(안) 개정·안내(23..3.)

- '불법찬조금 신고센터'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, 접근성을 개선하여 신고 센터 운영 활성화 제고
- (도교육청 홈페이지) 정보공개/민원>일반신고센터>불법찬조금 신고
-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

### V.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(불법찬조금) 신고센터 운영

#### 2. 신고사항

- 가. 「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(금지)사항」에 해당하는 경우
- 나.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·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
- 다.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
- 라.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각출 또는 기부금 모금·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
- 마.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·운영하는 경우

### ②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 강화

- (교육·홍보) 일반직,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과정에 학교회계(학교발전기금 포함), 공무원행동강령, 금품수수 규제 등 반부패 관련 교육과정 운영 및 홍보로 안정적 제도 운영 유도
- (인식 제고) 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 모금·사용 절차 등 연수 실시

### ③ 자체 불법찬조금 집중 점검 및 관리·감독 강화

- (집중점검)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점검을 실시(23.7~8.)  
하되,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는 중점 대상으로 점검 실시

## 참고

## 학교발전기금 조성·접수 시 제한(금지) 사항

### ○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(금지) 사항

#### (1)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

- 학년별·반별·개인별·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

#### (2) 기부액의 최저·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

#### (3)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(파악)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

#### (4) 모금을 직·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

-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(학생)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
-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(알림장 등에 기록)으로 납부를 강요

#### (5)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

#### (6)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·강요하는 행위

#### (7)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

-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

#### (8) 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, 학부모단체, 교사,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

#### (9) 학부모회, 어머니회,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각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(모금)하는 행위

#### (10)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·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

#### (11)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

- 어린이신문·납품업체,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

#### (12)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

○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

- (1) 리베이트(어린이 신문, 우유 납품업체,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) 등  
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
※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 
접수하여야 함(확인하여 선별 접수)
- (2) 유지·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, 건물 등의  
기부.(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  
용은 예외) 단,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
\*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
- (3) 각종 선거·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
- (4) 교직원복지(인건비성 경비, 교직원연수비, 회식비, 체육복구입비 등)를  
목적으로 하는 기부
- (5)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